



## 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 변경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2021년 개정)에 따라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교직원이 학생에게 일반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불가하나 보건교사 부재시의 일반의약품을 요청하는 학생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의약품 취급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아래의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반의약품이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약리 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지 않으며, 오남용될 우려가 적어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 (예. 감기약, 멀미약, 소화제, 위장약, 해열제, 알러지약 등)

- ①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에만 해당) 부재 시 일반의약품을 요청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보건교사 업무 대행자\*가 **학부모와 연락하여 현재 보유 중인 약품 리스트 안내 후 부모 동의 시 해당 약품 지급(알리지 확인, 주의 사항 안내)**  
(보건교사 부재시 업무 대행자: ①담임교사 ②교과담당교사 ③해당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④기숙사 사감(기숙사 관리 시간 일괄)
- ② **보건교사가 동행하지 않는 학교 밖 교육활동(현장학습, 체험학습, 체육활동 등) 시 학생의 상비약(예: 두통약, 소화제, 알레르기 약 등)은 개인별로 지참하여 필요시 자가 복용**해야 합니다.
- ③ **보건교사가 부재(출장, 연수 등)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 개인별로 필요한 상비약을 지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④ 다만,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 중 복용약을 제외한 **일부 외용약(밴드, 거즈 및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연고, 소독제, 파스류 등)에 대하여는 학부모님의 사전 동의를 얻어 기준과 같이 사용**하고자 하오니 동의여부에 체크하여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본교에서 사용하는 외용 일반의약품

: 후시딘, 케어리브(밴드), 버물리 패치, 안티푸라민 파프, 신신에어파스, 헥시코올스틱스왁액(소독제)

### 2. 1.에 해당하는 외용 일반의약품 사용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비동의

\* 동의하지 않을 경우 1. 에 해당하는 물품 사용시 학부모님의 구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025. 05. 19.

한 별 고 등 학 교 장 (직인생략)